

대전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19가단1265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정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교식

변론 종결 2021. 1. 19.

판결 선고 2021. 2.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9.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68,633,0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68,633,0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3. 28.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9,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대출거래약정(대출과목: 소공인특화자금, 대출개시일: 2017. 3. 30.,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서 이자율은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결정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019.7. 31. 기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배상금율은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17. 7.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으나, 2019. 7. 31.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9. 7. 31.을 기준으로 대출잔액 8,250만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9. 7.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5,000만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7.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1억 281만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9. 7. 26.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81,366,915원이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9. 2.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금 82,500,000원과이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일인 2019.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9.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 B의 자력, 피고 B이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정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B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2,000만원을 다시 피고 C에게 반환하였는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2009. 7.경 주식회사 E로부터 자동차 설비 제작을 도급받게되었고, 위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F'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다시하도급을 주게 되었으며, 위 G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위 하도급대금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주식회사 E와의 도급계약의 이행 여부나 도급대금 수령 여부 등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40일 이후인 2019. 9. 2.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C은 또한, 피고 B의 자금 융통 필요에 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인 점,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시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의 간격이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매매계약 이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수익자인 피고 C에게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억 5,000만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당시피담보채무 81,366,915원을

공제하면 68,633,085원(= 1억 5,000만 원 - 81,366,915원)이 되고, 이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보다 적으므로, 위 68,633,085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68,633,0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68,633,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오명희

[별지]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칠곡군 H에 있는 I건물 J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K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L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59.995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상북도 칠곡군 H 대 32443.3㎡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 비율 : 32443.3분의 31.2494

- 이상 소유자 C,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관할 -